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077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등 세액공제 신설(이해민의원안)	2

I. 개요

1.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07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해민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6. 25.
- (3) 회 부 일 : 2025. 6.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비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비는 가계 지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이러한 비용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신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필수 통신서비스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일부를 소득세에서 특별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디지털정보 접근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디지털취약계층에는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여 정보 접근권과 통신복지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54조 및 제59조의4).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등 세액공제 신설(이해민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특별세액공제에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추가(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 공제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요건: -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전화(인터넷전화), 이동통신, 인터넷 및 국민의 기초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비를 지급한 경우 ○ 공제형태: 세액공제 ○ 공제율 : - 15%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서비스 취약계층 : 25%) ○ 공제한도: 20만원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해민의원안 2025. 6. 25. 발의 (의안번호 11077)

☐ 개정안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일부를 세액공제 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의 필수적인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15%(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서비스 취약계층은 25%)를 연 한도 20만원에서 세액공제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휴대폰 회선 수는 5,723만 9,259개로,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등 일상생활에서 필수재적인 성격이 있어, 개정 조항의 기타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의료비 및 교육비와 같이 필수 소비 지출항목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연간 지출 가계동향”에 따르면 2024년 1인 이상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 지출은 12만 7,000원으로 전체 월평균 소비 지출(289만원)의 4.4%에 달함.

개정안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지출분의 일정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지출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과 같이 세액공제 적용 시 면세자¹⁾인 저소득층은 실질적인 정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정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동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세 지원보다는 재정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1) 2023년 귀속소득 기준 33%

2) 이해민의원안의 경우 특별세액공제 대상자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자는 근로소득 이외에도 연금소득 및 배당소득 등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거주자 또한 대상자가 되어 그 지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³⁾

[취약계층 이동전화 통신요금 감면제도]

구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감면대상	기본료 및 통화료 35%	월 26,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월 11,000원 기본 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월 청구요금 중 50%
감면한도	없음	월 33,500원	월 21,500원		월 11,000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라서, ① 한정된 재정 여건, ②조세지출 확대에 의한 조세 왜곡 및 복잡성 증대, ③ 조세지원 방식은 동일재정 투입 대비 정책 대상자 선별의 효율성이 낮아 경제적 비효율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⁵⁾

셋째,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액공제를 인정할 경우 전기요금 등 유사한 일상적인 경비에 대한 공제 요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전화(인터넷전화), 이동통신, 인터넷 및 국민의 기초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비’ 등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기초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

3) 이해민의원안의 경우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 지원을 통해 통신요금을 보전하는 정책대상집단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여 이중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음.

4)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할 경우 2025년 3,898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연평균 4,223억원의 재정 수입 감소를 예상하였음.

5) 조세지출 제도는 자격이 없는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일단 실행된 이후 그 운용 방식 측면에서도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 (The tax expenditure tool tends toward unfair results, both in the likelihood that undeserving groups of taxpayers obtain them, and in the operation of the tax expenditures once they have been enacted.) “Tax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2010, OECD, p.26

스의 범주에 대해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

한편, 일부 해외국가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사용된 통신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⁶⁾ 제도를 두고 있으며, 통신비는 개인 소비재로서 별도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⁷⁾

□ 한편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통신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7년 2조 1,549억원 등 2027~2031년까지 5년간 총 11조 2,139억원(연평균 2조 2,42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이해민의원안	△21,549	△21,979	△22,419	△22,867	△23,325	△112,139	△22,42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9

6) 독일 R 9.1 Abs. 5 - Telekommunikationsaufwendungen

Satz 1: Telekommunikationsaufwendungen sind Werbungskosten, soweit sie beruflich veranlasst sind.

제1문: 통신비 지출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인 한 소득관련 비용에 해당한다.

7) 미국의 세법관련 싱크탱크인 tax foundation 에 따르면, 재정 중립적인 상황(세수가 동일한 상황)에서의 식품세(grocery tax)의 면세는 소득분위 10분위 가계의 세부담을 9% 가량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수가 동일하다고 가정 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식품에 대한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he surprising regressivity of Grocery Tax exemptions, 2022. 04.) 따라서 필수재적 성격이 유사한 통신요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등 세부담 경감이 아닌 재정 지원을 통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될 수 있음.